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687

2024년 5월 3일
보건복지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년 4월 2일 황유정 의원 외 15명

2. **회부일자** : 2024년 4월 8일

3. **상정일자** :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4월 29일 상정· 의결(원안 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황유정 의원)

1. 제안이유

○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2024. 04. 12.~ 2024. 04. 16.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는 2018년부터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나[1], 현행 조례에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임(아래 표 좌측 참조).

○ 이에 본 개정안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범위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안 제7조1항제1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아래 표 우측 참조).

○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에 대한 개정 포함) 단,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조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4년 3월 15일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일(2025. 1. 3.)이 도래하지 않은 해당 조례(아래 표 가운데 참고)에도 이번 ‘개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포 후 시행 전’ 조문에 대한 별도의 개정문[2]을 함께 만들어 옴.

현 행	공포 후 시행 전 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2024. 3. 15. 공포, 2025. 1. 3. 시행)	개정 조례안 (2025. 1. 3.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 ---------- ---------- ----------

1) 자료: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2024. 3.) 2024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p5.

2) **(공포 후 시행일 도래전 조례의 개정문)** 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현 행	공포 후 시행 전 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2024. 3. 15. 공포, 2025. 1. 3. 시행)	개정 조례안 (2025. 1. 3.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
있다.		---.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1. (현행과 같음)	1. ----------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주요내용 검토

가.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안 제7조제1항제1호)

○ “한의약분야에서는 2009년 대구광역시를 시작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한의사회와 협력하여 한방난임치료사업들을 제공해오고” 있음[3].

○ “각 지역의 한방난임치료사업 성과가 축적되면서 이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황임[4].

○ 몇 가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①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한방 또는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여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② 인천광역시에서는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다음 페이지 참조).

<지자체 한방난임치료지원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연번	지자체	조례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정연도
1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사실혼 포함)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2020년
2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	명시 X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 2. 한방난임치료 상담·교육 및 홍보	2021년

3) 김윤환, 임병묵(2021), 수도권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의 정책 확산 영향 요인 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5호 제3호, 117-124.

4) 김윤환, 임병묵(2021), 수도권 한방난임치료지원 조례 제정의 정책 확산 영향 요인 분석, 대한예방한의학회지 제25호 제3호, 117-124.

연번	지자체	조례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제정연도
3	경기도	경기도 한의약 난임사업 지원 조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2019년
4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한의약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사업	2020년

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검색일 2024년 4월 10일 기준).

○ 하지만 서울특별시는 조례에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 이에 본 개정안은 이 조례에 한방난임치료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인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이러한 이유는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5]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6]고 규정하고 있음.

---

5)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7. <생략.>

6)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또한 이미 “난임 지원사업은 정부가 추진한 2단계 재정분권에 따른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2022년 1월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이러한 “재정분권의 취지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7] 있음.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서울특별시는 2018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고, 이러한 서울시의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자연 임신성공률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

<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개요>

- **대 상:** 자연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또는 사실혼부부)(원인불명의 난임)
  여성나이: 197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신청일 기준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한 서울시민
  ※ **한의약 난임치료기간(3개월)동안+관찰기간(2개월) 의과 난임시술비 중복지원 불가**
- **치료기간:** **1회 치료기간 총 5개월** 〔3개월(집중치료)+2개월(관찰기간)〕
- **내 용:** 한의약 난임 치료 3개월 첩약비용의 90% 지원(120만원) ※수급자 및 차상위는 100% 지원
- **지원횟수: 신청일 기준 1인 생애 최대 2회(연 1회)**
- **사업신청: 주소지 관할 보건소**(부부동시 치료시 여성 주소지) 또는 **직장 소재지 보건소**
- **구비서류**
  - 원인불명의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난임 진단서(난임시술병원, 산부인과 전문의), 사전 선별지
    ※ 난임시술병원 진단서 제출시 남성 진단서 제출 생략 가능(단, 남성 단독 시, 여성 진단서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사전선별지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smom)에서 사전 선별 자가 점검
  - (공통) CBC, LFT, BUN/Cr (남)정액검사 (여)풍진면역, AMH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가 다를 경우), 사실혼 증명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확인서(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 확인 필요시)

❖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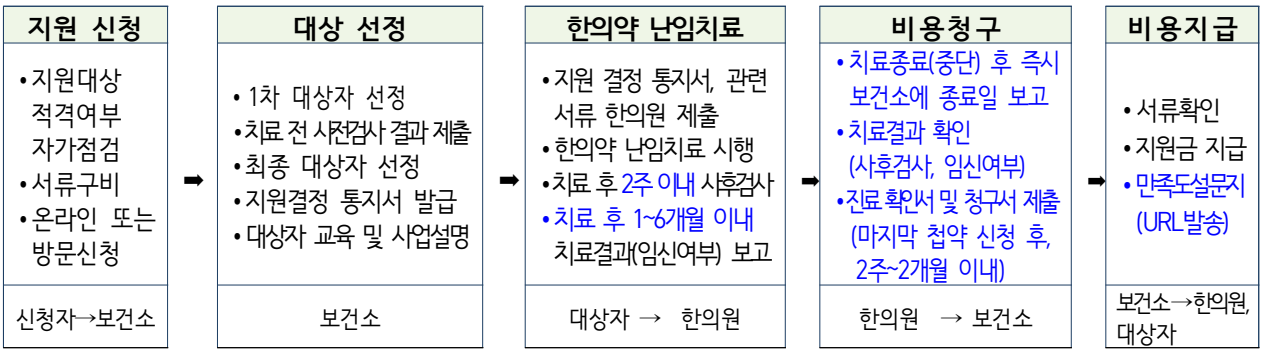

자료: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2024),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매뉴얼, p1.

7) 김태환(2022), 우리나라의 난임 지원제도에 관한 고찰, 사회법연구 제47호, 531-565.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추진실적>

연도	참여자수* (명)	치료 종결자수 (명)	임신성공률** (%)	지정한의원 (개소)	사업전반 자문(건)	사업만족도 (%)
2023	286	229	14.91% (17명/114부부)	360	307	87.6
2022	328	207	19.16% (23명/120부부)	383	171	82.1
2021	249	203	17.39% (20명/115부부)	250	21	85.5
2020	226	117	14.92% (10명/67부부)	215	57	88.2

*참여자수(명): 전년도 이월자 수 + 당해연도 신규자 수
**임신성공률(%): (출산아 수/치료완료 부부 수)×100

자료: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2024), 2024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계획, p6.

○ 참고로, 최근 국회에서도「모자보건법」을 개정(일부개정 2024. 2. 6.)[8]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집행기관 의견(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 집행기관 역시 이번 조례개정으로 우리시가 2018년부터 지속 추진중인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의 명시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어 조례 개정에 동의함.

8)「**모자보건법**」[시행 2024. 8. 7.] [법률 제20215호, 2024. 2. 6.,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에 대한 건강관리 등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 **난임극복 지원의 내용 중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에 「한의약 육성법」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한방난임치료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토론요지 : 「없음」

Ⅵ. 심사결과 : 원안 가결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유정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87

발 의 년 월 일 : 2024년 04월 02일
발 의 자 : 황유정, 강석주, 김ㆍ경, 김혜지, 남궁역, 박춘선, 신동원, 신복자, 유만희, 유정인, 윤영희, 이소라, 이종배, 이종태, 정준호, 최호정 의원(16명)

1. 제안이유

○ 난임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다수의 환자가 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한방난임치료를 이용하고 있음.

○ 서울시는 2018년부터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상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어,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난임극복 지원사업의 내용으로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지원사업”을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공포 후 시행 전 조례안 (서울특별시조례 제4646호 2024. 3. 15. 공포, 2025. 1. 3. 시행)	개정 조례안 (2025. 1. 3. 이전에 공포 시행 예정)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
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	1. (현행과 같음)	1. ---------- 지원사업. 이 경우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방난임치료 비용의 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2. ~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산·사산 예방	

	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사업 2. 유산·사산부부에 대한 상담·심리 지원사업 3. 그 밖에 유산·사산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를 변경·신설함에 따라 관련 비용이 발생하지만 확인결과 현재 기추진사업(붙임 참고)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참고〕 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본 안 제7조 관련)

(단위: 천원)

과목구분	2024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교육 및 사업모니터링 평가용역 등** 22,000,000원	= 22,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운영** 278,000,000원	= 278,000

주 : 제7조(지원사업)제1항제1호 관련 예산은 총 **300,000천원**임

자료 :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서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오희선

추계세제팀장 이정수

추 계 분 석 관 손제승

☏ 02-2180-7954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붙임**〕 2024년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예산 (본 안 제7조 관련)

☐ **사업목적**

○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으로 난임부부의 경제적부담 경감 및 저출생 극복에 기여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24.1월 ~12월(연례반복)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원인불명의 난임부부

○ 사업내용

- 난임부부 대상 한의약 난임치료 첩약비 지원(부부 공동 또는 남녀 단독)
- 지정 한의원 및 보건소 담당자 교육, 사업홍보 등
- 한의약 난임치료지원사업 기술지원 및 결과분석 위탁 지원단 운영

○ 소요예산 : **300,000천원(전액 시비)**

☐ **향후 기대효과**

○ 난임부부의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으로 건강한 임신 및 출생율 향상 도모

자료 : 2024년 서울시 시민건강국 예산설명서 발췌